

(통권 21-8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1. 5. 18.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I. 경제	1.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1
II. 재정	2. 전국 지자체 500억원 이상 재정투자사업 현황 분야별 분석	3
	3.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 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5
III. 정책	4.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7
	5. 농촌축제 실태와 지역활성화 효과 제고 방안	10
	6. ‘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의 의의와 시사점	12
	7. 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지방세	14
IV. 법률 제·개정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등10인)	16

1.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과 대면소비에 대한 기피는 전체 가계소비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비대면소비는 오히려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가계소비는 감염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대면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된 반면, 비대면소비는 대면소비 제약에 따른 소비감소를 완충하기 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

- 특히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높은 고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등 비대면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
- 반면,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은 중위소득 계층의 경우 코로나19의 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됨에 따라 내구재소비를 줄이고 예비적 저축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가계소비의 변화가 코로나19의 확산에 주로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이 잦아든다면 가계소비의 회복세도 그동안 부진했던 대면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될 전망
- 다만, 코로나19로 변화되었던 소비구성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도 반영되면서, 비대면소비의 증가율은 낮아질 가능성

○ 가계소비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완화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할 필요

- 신속한 백신 보급과 지속적인 방역을 통해 최근 가계소비 부진

의 주요인인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

- 낮은 이자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완충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가계소비를 비롯한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
-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가계의 시장소득 감소가 추가적인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와 수준에서 재정지원을 고려할 필요
- 중간소득계층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충격이 크게 나타난바, 경제주체별 소득수준과 함께 소득 충격의 규모도 함께 고려하여 정부지원의 대상을 선정할 필요
- 또한 효과적인 방역이 가계소비 회복의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방역정책의 수용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조치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부담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필요

출처 : KDI (경제전망, 2021.5)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2. 전국 지자체 500억원 이상 재정투자사업 현황 분야별 분석

- 2013~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총 사업비 규모 74조원 중 집행액 49조원, 집행률은 66.68%
 -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집중
 - 전국 지방재정 2013~2019년 500억 이상 대규모투자사업의 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0조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4조원으로 건설사업 위주의 2개 분야가 전체 분야 총액의 72.98%
- 투심 후 감액규모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커, 재정투자에 소극적
 - 사회복지 분야는 투자심사 의뢰 시 총사업비 규모가 5.3조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수송 및 교통 2개 분야에 이어 3번째로 컸으나, 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는 2.5조원으로 투심 의뢰 시의 47% 수준으로 감액
 -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경우 모두 투심 의뢰 시보다 사업추진 시 총사업비가 100.7% 규모로 소폭 인상된 것에 비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상당히 소극적임
- 지방재정투자에서 소외되는 4개 분야 :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보건
 - 교육 분야의 재정투자사업은 전무하며, 그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보건 분야 순서로 재정투자사업 규모 작음
 -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을 거치며 보건분야 및 교육분야(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 등)의 문제 대두. 특히 보건분야의 경

우, 전국 지자체는 243개에 달하는데 비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
은 지역거점 의료원은 42개소(지방의료원 36개소, 분원 2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에 불과

- 지자체의 역할을 검토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총사업비의 72.9%가 건설사업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분야에 집
중된 데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
- 사회복지,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보건 분야에 대한
재정사업 필요성 검토 및 필요 시 적극적 재정 투자가 필요함

출처 : 나라살림연구소(나라살림브리핑 제159호, 2021. 4)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3.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경제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 한국의 2020년과 2021년 재정기조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추경이 집행되었던 2009년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확장적인 모습을 보임.
 - 다만, 추가적인 재정 대응의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요국 대비 경제충격의 크기가 작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함.
-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경제위기에서의 확장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기조의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여력이 약화될 수 있음.

- 경기위축 시기에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만큼, 향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는 이를 정상화하여 경기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 노력을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출처 : KDI (현안분석, 2021.4)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4.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 전국 대도시로 집중되던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도시 중과세제도 도입
 - 1960년~1970년대 서울·부산·대구로의 인구·산업 집중이 문제화 되기 시작함에 따라 1972년 대도시 법인 등록세 중과제 도입되었고, 1973년 공장 취득세·재산세 중과제도가 도입됨
 - 중과세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도권 집중억제로 초점이 맞춰지며 지역적 범위가 전국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전환됨
- 현 중과세 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임.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 과도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의 경기도 일원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크게 'a)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대한 중과세', 'b) 법인 본점 신·증축에 대한 중과세', 'c) 공장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로 구분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추세는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중과세제도를 통해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지양하고 지역균형발전 추진 필요
 - 2018년 기준 전국 인구의 49.7%(2.6천만명)가 수도권 집중, 사업체 수의 20.0%(82만개)가 서울, 47.1%(193만개) 수도권 집중
-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과세제도에 의한 기업활동 위축은 지역경제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성장 능력을 상당부분 잠식 우려
 - 도시 간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중과세제도는 세계 주요 대도

시에 비해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 원리적으로 중과세제도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과밀억제 권역 입지유인을 저해하므로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 그러나 중과세제도가 실제로 과밀억제권역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했는 지의 여부는 기존 논의로는 충분한 판단이 어려움
 -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과세제도의 변화에 따라 전국 대비 서울의 기업비중이 영향을 받는 양상은 식별하기 어려워 보임
-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중과제외업종 추가
 - 벤처기업 창업은 기업가정신을 살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모험적 투자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나 과밀억제권역 벤처기업 법인설립 등 창업활동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는 상황임
- 금융중심지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의 중과제외업종 추가
 -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자금을 융통하는 산업으로서 파급력이 크므로 적절히 관리되고 육성되어야 할 필요 있음.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금융중심지 내의 금융산업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대해 지방세를 중과하는 상황임
- 핀테크 업종의 중과제외업종 추가
 - 핀테크 (FinTech)는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산업으로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성이 높아 보임.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 타당성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예비벤처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과

금융중심지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수의 핀테크 업종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핀테크 업종의 중과제외업종 목록 추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서 ‘금융업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 핀테크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 과밀억제권역 핀테크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항을 준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REPORT 제111호, 2021. 3.)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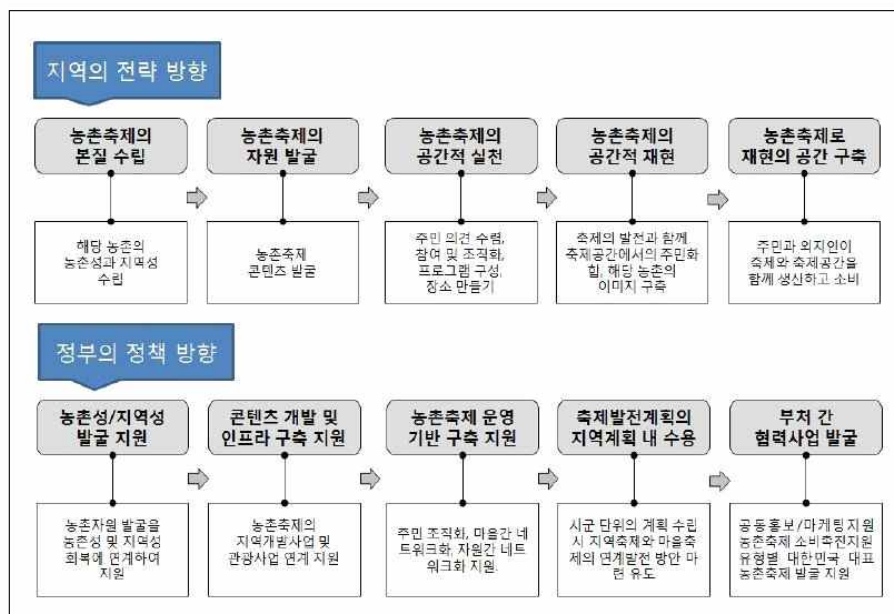
5. 농촌축제 실태와 지역활성화 효과 제고 방안

- 농촌 시·군에서는 꼭 축제 때문만이 아니라도 지역의 농촌성과 지역성이 풍부한 자원을 꾸준히 조사하고 발굴하는 노력 필요
 - 다양한 주민 참여하면서 지역정체성 공유, 역량강화하는 계기
 - 행정의 축제 담당 공무원들과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조사·발굴된 지역자원을 축제 콘텐츠 DB화, 주민 조직들과 공유 필요
- 농촌지역은 축제 준비, 개최, 운영하는 공간적 실천단계를 추진
 - 발굴한 지역의 자원을 정부나 지자체 사업 등에 관해 주민 등에게 적극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 유도 필요
 - 마을과 읍·면, 지역을 가꾸고 꾸미는 공동의 과정이 축제를 기획하는 일이고 그 기획과 실천에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현한 결과를 다 같이 즐기면서, 또 다른 실천과 다음 해의 개선된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 농촌축제
 - 이제 가꾸어지고 꾸며진 장소에 외지인들도 초청하여 축제 콘텐츠로 프로그램화하고, 축제 콘텐츠를 채울 공간을 재정비
 - 인근주민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외지인이나 도시민들도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기 시작, 음식과 서비스, 농·특산물, 즐길만한 프로그램 등을 주민들이 준비, 섭터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정비하며 숙박시설과 식당도 마련, 농촌축제를 통해 소득 창출 가능
 - 화천군의 토마토 축제, 증평군의 삼보산골 축제.
- 다음은 농촌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여강화를 도모해야 하는 단계
 - 농촌축제 개최지의 농촌주민과 축제 방문객들이 주기적이고 지

속적인 만남을 통해 모두 축제의 주체가 되는 단계까지 발전.

- 농촌주민은 축제 제공자, 방문객은 소비자라는 구분이 깨어짐.
양자 간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은 농촌축제를 발전시키는 모멘텀
- 이제 ‘○○○ 축제’ 하면 특정 농촌마을, 특정 농촌지역의 읍·면, 특정 농촌 시·군을 바로 떠올리게 됨
- 이런 인식과 그 인식에 바탕을 둔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공간적 실천을 통해 추진해가는 공간적 재현은 중국에는 해당 마을, 읍·면, 농촌 시·군을 재현의 공간으로 탄생
-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되는 농촌자원, 주민역량, 도농교류 및 지역 간 교류, 농촌지역과 전문가 및 전문집단과의 협력네트워크는 농촌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농촌축제를 정부 등 공공에서 지원해야 함

〈그림 6-1〉 농촌축제 발전 및 농촌 활성화 제고를 위한 지역 전략 및 정부 정책 방향



자료: 저자 작성.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2021.3) 원문은 e-mail

6.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를 보내기는 하나 별 다른 대안 없이 지방의 부정적 위기감을 가중
 - 지방소멸위험지수에는 현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40~50대 연령집단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현실적으로는 가임여성 인구수가 많은 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임기 여성 인구수(15~49세)가 적은 군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더욱 높음.
 - 더욱이 인구의 수만 가지고 지방소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역의 육아 및 보육 분위기 등 지역사회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더욱 긍정적인 성격의 지표 발굴이 필요함.
-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두 자녀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가능인구 비율로 구성
 -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출생아 수를 넘어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며 지수 값 1을 기준으로 수치 의미 해석함.
 -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육아·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
 -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 순으로 평균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나며, 지수 값이 2 이상인 19개 상위 지역은 모두 군 지역임.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오히려 낮게 나

타나고 있으며 경북·경남, 전남 군 지역에서 지수 값이 높게 분포하는 특징이 나타남.

- 그러나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높은 지역의 아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관련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으로 이주를 하며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남.

○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높은 농촌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더불어 학령기 아동이 걱정 없이 성장·거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출산 후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더불어 농촌의 학령기 아동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안정된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구 유출 억제 정책이 필요함.
- 산청군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과 경남도의 임신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의성군의 출산·일자리·주거 연계 지원, 강진군의 주민 공동육아카페와 다함께 돌봄센터, 고흥군의 민간 단체 중심 ‘사회복지 협의회’ 구성 등은 학습해야 할 주요 사례임.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2021.3) 원문은 e-mail

7. 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지방세

- 기후변화 대응에서 시작하여, 미세먼지문제가 대두될 때까지 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환경과세적 성격의 필요성, 친환경자동차 소비문화로의 전환유도 등에 대한 필요성 논의 지속 중
 - 실질적인 과세체계 변화를 통한 정책적 활용은 전무
 - 다만, 기존 과세체계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낮은 정액세 부과, 취득세 감면제도를 운용하는 소극적인 대처 수준
 - 자동차 시장환경은 급변하여 본격적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새로운 전기자동차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친환경자동차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
 - 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그린 모빌리티 보급확대의 정책적 목표와 맞물려 보급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
- 이러한 정책목표의 강화와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의 재정립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
 - 첫 번째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를 동시에 아우르는 자동차세의 과세목적과 과세기준의 재정립 필요.
 -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체계는 내연기관 자동차만을 반영한 과세기준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에 동시에 형평하게 적용할 수 없음.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유세 혜택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에 대한 대응 필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로 인하여 유발되는 사회비용 등에 대한 기본재원으로서의 과세목적은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자동

차도 이러한 과세목적에 대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부담의 의무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를 모두 감안하는 과세체계를 수립하고, 일시적으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제도 등을 운용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시장의 변화에 대응과 세입감소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해소
- 두 번째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적 환경세 별도 부과
 -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세목이나 부과금을 도입하여 부과하거나, 자동차세에 배출량 등의 추가기준을 더하여 추가
 - 독일과 노르웨이의 사례는 중량 기준의 기본 자동차세에 CO₂, NO_x 배출량 기준을 추가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에 자동차세를 추가로 부과. 이러한 과세체계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를 직접적으로 강화하여 정책적 효율성을 증가
- 세 번째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감소
 - 재정지출의 감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염두가 필요한 부분
 - 그린 모빌리티 보급확대 등 국가적 정책과의 정합성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2~3% 수준인 현재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
 - 그러나, 친환경자동차의 소비문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세 제혜택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마땅
 -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여온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세제혜택 축소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포럼, 2021. 3)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등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시당 세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고성능·고가의 자동차가 출시됨에 따라 배기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성능·저가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하여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출처 : 국회의안시스템

원문은 e-mail에 첨부함